

의 안 번호	2433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】 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-	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5. 30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5. 3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6. 12.(목)

#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보고서를 심의·의결 받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총괄

(단위: 원)

전년도말 조성액 <sup>Ⓐ</sup>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<sup>Ⓔ</sup> = <sup>Ⓐ</sup> + <sup>Ⓓ</sup>
	계 <sup>Ⓓ</sup> = <sup>Ⓑ</sup> - <sup>Ⓒ</sup>	조 성 액 <sup>Ⓑ</sup>	사 용 액 <sup>Ⓒ</sup>	
8,595,330,960	4,334,172,740	4,334,172,740	0	12,929,503,700

### 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

### 5. 검토의견: 없음

## 근거법규

#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11. 5. 30.]

###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9>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29.>